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992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05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재경부 소관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우리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취소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이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일부개정공고안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추천기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추천의 취소)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하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의1호서식]

추천번호: <input style="width: 200px;" type="text"/>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HP:)			(HP:)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 세 구 역 반출 예정일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만료일: 20 . . . 까지 ◦ 보세구역 반출기한: 20 . . . 까지 ◦ 실수요자 공급기한: 20 . . . 까지 <p style="margin-top: 10px;">「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추천기관장) (인)</p>							
<p>※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p> <p>① (생 략)</p> <p>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u>제2-1호</u> 또는 <u>제2-2호</u>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p> <p><u><후단 신설></u></p> <p>③ ~ ⑤ (생 략)</p> <p>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u>제2의1호</u> 또는 <u>제2의2호</u>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u>이 경우 추천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추천기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p> <p><u>③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u></p>

<신 설>

<신 설>

<신 설>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집중관리품목 중 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기한을 지정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공급의무기한 내에 실수요업체에 공급해야 하며, 그 이행실적 증빙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실수요업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추천의 취소) 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하며, 추천 취소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관검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 또는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를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별지 제2-1호서식]

추천번호:							
할당관세적용추천서							
구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입자			
상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	P	:	(HP:)
팩스번호							
○ 추천내용							
세번번호(HS)	품명	수량 및 단위	금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	용도
○ 유효기간 만료일: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 . .</div> <div style="text-align: right;">(추천기관장) (인)</div>							
※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지 제2의1호서식]

추천번호:							
할당관세적용추천서							
구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입자			
상호							
주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	P	:	(HP:)
팩스번호							
○ 추천내용							
세번번호(HS)	품명	수량 및 단위	금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	용도
○ 유효기간 만료일: 20 . . . 까지 ○ 보세구역 반출기한: 20 . . . 까지 ○ 실수요자 공급기한: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 . .</div> <div style="text-align: right;">(추천기관장) (인)</div>							
※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